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363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0일

발 의 자 : 송재혁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정환, 김제리, 봉양순,
오중석, 오한아, 이정인, 장상기,
전병주, 한기영 의원(10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공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허브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공유허브의 성격을 “공유플랫폼”으로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플랫폼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 촉진을 위한 민간자원의 현황, 관련 정보, 정책 및 자료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공유플랫폼”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시장이 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5호의2 신설).

다. 기본계획, 실태조사의 결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목록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유플랫폼”이란 공유 촉진을 위한 민간자원의 현황, 관련 정보, 정책 및 자료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제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의 운영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정보의 공개)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제5조의3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목록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공유플랫폼”이란 공유 촉진을 위한 민간자원의 현황, 관련 정보, 정책 및 자료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u></p> |
| <p>제5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 <p>제5조(공유 촉진정책)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5의2. <u>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의 운영</u></p> |
| <p>6. (생략)</p> <p><u><신 설></u></p> | <p>6.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의2(정보의 공개)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제5조의3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목록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p> |